서울특별시 중구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2월18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1. 제정이유

우리 구에 소재하거나 관리하는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조 치가 종료된 퇴소아동 등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조).
- 나. 퇴소아동 등의 자립과 자활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5조).
- 다. 퇴소아동 등의 자립 자활을 위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라. 보호기간을 연장하거나 해당 복지사설의 장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
- 마. 퇴소아동 등의 자립과 자활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2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9길 40(을지로6가 18-14) 의회사무과

- 전화: 02)3396-8157 팩스: 02)3396-9055

- E-mail : queen@jungqu.seoul.kr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 적·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아동복지시설"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2. "퇴소아동"이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으로서 법 제16조에 따라 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을 말한다.
 - 3. "보호조치 종료 아동 등" 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 또는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아동으로서 법 제3조제1호의 연령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라 연령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의 우선 적용대상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거나 구가 관리하는 아동복지시설에 적용한다.
 - ② 구청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아동복지시설의 퇴소아동, 보호조치종료 아동 등(이하 "퇴소아동 등" 이라 한다)에 대해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제외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퇴소아동 등의 자립과 자활을 통하여 건전한 지역 사회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시책을 발굴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 사업 등) ① 구청장은 퇴소아동 등의 자립 및 자활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발굴·시행할 수 있다.
 - 1.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 2. 자산형성 컨설팅 지원(금융 컨설팅)
 - 3. 인성 및 직업교육 지원
 - 4. 치료 및 재활 등의 건강프로그램 지원
 - 5. 정서적 · 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및 지원
 - 6. 후견인 제도 지원 및 후원 연계
 -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기관 등에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수 있으며,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③ 제1항에 따른 퇴소아동 등의 지원과 관련하여 선정기준, 범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대상자 관리 및 지원) ① 담당공무원은 퇴소아동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 링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한다.

- ② 구청장은 퇴소아동 등이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집중관리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합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전문 사례관리사를 통한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 제8조(보호기간 연장) 구청장은 법 제1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에 대하여 그 보호기간을 연장하거나 해당 복지시설 의 장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퇴소아동 등의 자립과 자활을 돕기 위하여 전문가, 단체 및 시설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